

스타트업 계약서 Kit (V.1.0)

# 주주간계약서

## 안내사항

- 본 계약서 양식의 개별 조항 및 안내글은 사용자 상황에 따라 수정/보완/삭제/변경될 수 있으며, 어떠한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
- 본 계약서(안)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기타 손해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와 모두싸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최종 계약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
## 주주간계약서 소개

주주간계약서는 기업 설립 시 또는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서 주주(공동창업자) 간 견업, 주식의 처분, 근속 의무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하고 예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. 본 계약서는 2 명의 주주(공동창업자)가 서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주주 구성의 폐쇄성을 유지하며 미연에 경영권 분쟁을 방지하고 회사의 공동창업자로서 일정 기간 회사에 근속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. 본 계약서 활용 시 주주의 수, 각 주주의 지분비율과 그에 따른 차등적인 의무부담 등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수정하여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.

## 주의사항

### 1. 계약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세요.

계약서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. 계약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나눠보세요.

### 2.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.

본 계약서 및 해설서는 기업의 규모, 업종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른 불특정 다수의 기업(또는 개인)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. 일반적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계약서를 표준화하였습니다. 본 계약서와 해설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.

### 3. 표준적인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표준적 형태의 계약서는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. 개별 조항은 사용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되어야 합니다. 본 계약서(안)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기타 손해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와 모두싸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### 4.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세요.

최종계약서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해야 사용자에게 필요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 주주간계약서

주주 000, 000(이하 개별적으로 또는 총칭하여 "주주"라 한다)는 주식회사 000(이하 "회사"라 한다)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.

## 제1조 목적

본 주주간 계약은 회사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, 주주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간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 겸업의 금지

주주는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,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 또는 제 3자와 동업으로 경영 하거나, 타인의 동종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또는 동종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취득하는 등 동종의 사업에 관여하는 행위를 일체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[해설]

주주들이 공동창업자로서 회사의 업무에만 집중하고, 이직이나 겸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입니다.

그럼에도 주주들이 다른 사업이나 직업을 영위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<단, 아래에 나열한 주주의 업무에 대해서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.

- 주주 000 가 0000.00.00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000 에서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
- 주주 000 가 0000.00.00 부터 재직하고 있는 회사인 000 에서의 개발팀장으로서의 업무>

## 제3조 주식의 처분 제한

주주는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,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 3 자에게 양도,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 일체를 행할 수 없다.

**[해설]**

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 3 자에게 매각하거나 처분하여, 주주 구성이 예상과 달라져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. 초기 기업에서 대부분 필요합니다.

다만 이러한 주식 처분 제한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주식 처분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판례는 주주간에 소정기간 주식을 제 3 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, 그 약정을 어기고 제 3 자에게 주식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 자체가 무효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. (대법원 2000. 9. 26 판결, 99 다 48429)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주식의 양도 자체는 유효하여 양수인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도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, 양도자의 계약위반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 (대법원 2008. 7. 10. 판결 2007 다 14193)

따라서 본 계약을 체결할 때, 제 3 조의 내용에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한다고 해도 주식을 양수한 제 3 자는 정당한 주주가 될 수 있으며, 다만 주식을 양도한 자는 본 계약을 위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한편, 본 조항에는 주식의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도 있고, 본 조항 위반 시 위약벌을 규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주식의 처분 제한 규정을 강화 또는 약화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다른 주주가 주식의 처분을 허락할 경우에도, 그 허락한 주주의 우선매수권(Right of First Refusal) 또는 공동매도권(Tag-along Right)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

만약 주식처분이 제한되는 기간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 3 조를 변경하면 됩니다.

<주주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 년간 회사의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,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 3 자에게 양도,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 일체를 행할 수 없다.>

또한 위약벌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 3 조를 변경하면 됩니다. 다만 위약벌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법원에 의하여 해당 위약벌 조항이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,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벌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주주는 회사의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,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 3 자에게 양도,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 일체를 행할 수 없다. 어떠한 주주가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금 1 천만원(10,000,000 원)의 위약벌을 다른 주주에게 지급한다.>

#### 제4조 근속 의무

- (1) 주주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재직하여야 한다.
- (2) 주주가 위 기간 내에 회사를 퇴직하거나,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등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, 해당 주주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의 전량을 액면가로 매도하여야 한다.

##### [해설]

주주들이 회사에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는 조항입니다.

또한 주주가 자의 또는 타의로 회사에서 물러나는 경우,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퇴직하지 않도록 퇴직 시 주식을 액면가로 반환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
제 4 조 제 2 항의 주식 반환 시,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다른 모든 주주에게 주식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.

또한 제 4 조 제 2 항의 주식의 반환은 본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모든 주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, 일정기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반환해야 할 주식이 줄어드는 조건(이른바 Vesting Schedule)을 본 항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.

#### 제5조 중도 해지

- (1) 주주는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
- (2) 주주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타 주주는 2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으며,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주주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주주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(3) 본 계약 해지에 대해 귀책사유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(주식을 포함한다)를 포기하여야 하며,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.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 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타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, 1주당 양도가격은 액면가로 한다.

**[해설]**

본 계약의 해지는 주주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.  
또한 본 계약의 체결 목적은 주주 구성의 폐쇄성을 유지하는 것인바,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주주는 본 계약 해지 시 자신이 보유하던 지분을 다른 주주에게 모두 반환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.

**제6조 계약의 변경**

본 계약은 주주 전원의 서면 합의로만 변경될 수 있다.

**제7조 계약기간**

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존속한다.

1. 주주간에 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
2. 회사가 해산, 청산을 거치는 등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

**제8조 완전 합의**

본 계약은 주주간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, 본 계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한 구두 또는 서면의 명시적인 또는 암시적인 약속, 조건 또는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. 본 계약은 본 계약이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이전의 모든 합의를 대체한다.

**제9조 비밀 유지 의무**

주주는 타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, 본 계약에 따른 거래 및 회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,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[해설]**

본 계약의 내용은 물론, 본 계약의 존재 역시 비밀 유지 사항에 포함됩니다.

**제10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금지**

주주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에 따른 본인의 권리, 의무,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주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양도, 이전할 수 없다.

### 제11조 불가항력

주주는 화재, 폭풍, 홍수, 지진, 사고, 전쟁, 반란, 폭동, 기타 민란, 전염병, 격리, 천재지변, 정부조치 등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본 계약 조건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### 제12조 관할

이 계약은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해석되고, 협의에 의하여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**서울중앙지방법원**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.

#### [해설]

분쟁발생 시, 소송이 제기될 법원을 미리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당사자 중 1인의 주소가 위치한 곳의 관할법원으로 지정합니다.

*(서명, 날인을 위한 여백입니다)*

당사자들은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첫머리에 기재된 일자에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000 (주민등록번호) (인)

주소

000 (주민등록번호) (인)

주소